

제7대 대한장애인탁구협회 회장 선거 일정

일 시	내용	비고
'20. 11. 06.(금)	선거인 수 통보	
'20. 11. 26.(목)	시.도지부 선거인단 접수	
'20. 11. 26.(목)	회장 선거일정 안내 홈페이지 공지	
'20. 11. 30.(월)	선거일정 공고 및 후보자 등록 안내	
'20. 11. 30.(월) - 12. 02.(수)	회장 후보자 등록 기간	방문접수만 가능
'20. 12. 03.(목)	제7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회장 후보 기호 추첨)	
'20. 12. 03.(목)	회장 후보자 등록 공고	본 회 홈페이지
'20. 12. 04.(금) - 12. 10.(목)	선거운동 기간	
'20. 12. 01.(화)	선거인명부 공고	본 회 홈페이지
'20. 12. 01.(화) - 12. 03.(목)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 12. 04.(금)	선거인 이의신청 처리 및 선거인 명부 확정	
'20. 12. 11.(금)	제8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올림픽파크텔
'20. 12. 11.(금)	회장 선거	올림픽파크텔
'20. 12. 12.(토)	회장 당선인 공고	본 회 홈페이지

대한장애인탁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2조의2(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2천만원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탁금의 납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③ 기탁금은 투표일로부터 5일 이내 반환한다. 단 투표인수 15%미만 획득시 협회에 귀속된다. <신설 `2020.11.20.>

제16조(선거일)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현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45일까지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업무행위

제18조(선거운동 주체 및 방법) 후보자는 전화, 명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일에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10.8.>

제19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한다. 단, 제15조에 따른 후보자의 선거당일 정견발표는 예외로 한다.

제20조(금지행위) 다음 각호의 해당 행위를 금지한다.

1. 특정인의 인신공격 등 중상비방을 하거나 서명날인 운동을 주동, 선동 또는 참여하는 행위
2. 선거에 관하여 금품수수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3. 입후보자가 회장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별도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선거중사자를 운영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 및 협회 직원이 특정인 지지 옹호, 격려하는 행위<개정 2020.10.8.>
5. 허위의 이력을 기재하여 배포하는 행위
6.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참고 규정